

‘시간단위 연차제 도입 등’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8.28.(목) 이데일리, “불일 있을 땐 2시간 휴가” 연차 사용 유연해진다

2. 설명 내용

-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‘시간단위 연차제 도입, 연차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, 연차 신청·사용시 불이익 처우 금지, 연차 저축제 도입’ 등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
-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

담당 부서	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수 (044-202-7543)